

『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, 고용애로 해소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「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2월 25일

(재)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I 신청자격

- 기업 :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, 비전기업,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유효기간 내 기업
 - ※ 2019~2020년 「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, 「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기업 제외
- 청년 :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
 - * 만39세 기준 : 1981. 1. 1. 이후 출생 자
 - ▶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 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

II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2년 이내
 - (당해년도) 신규청년 채용일 ~ 2021년 12월
 - (인건비 지원) 참여 청년 채용일(근로개시일)* ~ 2년
 - * 채용일(근무개시일)은 기업선정 이후 신규채용부터 적용하고, 사업 예산 확보 시 2년간 지원 가능 (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)

- 채용 한도 : 기업당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
 - 기업 참여 적격 확인 및 기업선정일 이후 신규청년 채용통보일 순으로 인원 배정하되, 예산 범위 내 예비순위를 부여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지원 예정
- 공통사항
 - (지원금액) 1인 인건비 월 1,800천원 [기업부담 200천원 이상]
 - ▶ 신규채용 청년 기본급 기준 월 2,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필수
 -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·반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·반복지원 불가(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)
- 채용 청년 교육 등 지원(참석 필수)
 - 채용 청년 교육,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
 -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(교육 수강료, 자격증 취득비 등 1인 최대 50만원 지원), 정부 등 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
 - (인센티브 지원) 참여사업장에서 2년 만기근무 청년 인센티브 직접 지원(연간 1,000만원, 분기별 250만원 지급)
 - ▶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정부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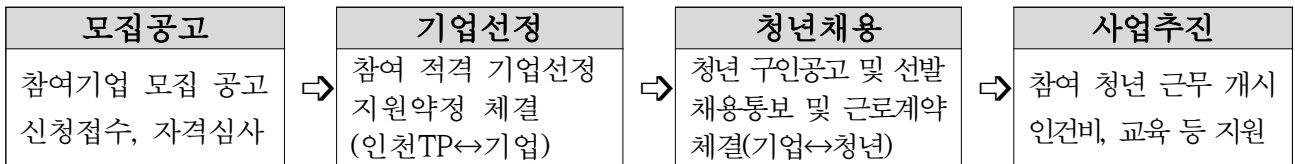
III 신청방법

- 신청 및 접수기간 : 2021. 2. 25(목) ~ 2021. 4. 30(금), 18:00
 - 접수, 자격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

접수 기간	자격검토 기간	기업선정 통보	비 고
2. 25(목) ~ 3. 10(수)	3. 11(목) ~ 3. 12(금)	3. 15(월)	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.
3. 15(월) ~ 3. 26(금)	3. 29(월) ~ 3. 30(화)	3. 31(수)	
4. 01(목) ~ 4. 14(수)	4. 15(목) ~ 4. 16(금)	4. 19(월)	
4. 19(월) ~ 4. 30(금)	5. 03(월) ~ 5. 04(화)	5. 06(목)	

-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E-mail 제출
- 접수처 : (재)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
 - (소재지)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4층
 - (문의) 032)725-3043 / 이메일 : mjkim@itp.or.kr
- 신청서류 [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.]
 -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부
 -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부
 -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·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기업체) 1부
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
 -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 -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부
 - 구인신청서 1부[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통서식]
 -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

IV 지원절차



V 유의사항

- 제외대상
 -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 채용 계획인 기업
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
 -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
 - 해외기업(법인)의 국내기업(법인) 및 지사
 -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

-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및 국세·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
 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
 -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
- 청년근로자 선발
- 참여기업은 대상 기업선정 이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 온·오프라인 모집 공고, 접수, 면접 등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참여 청년을 선발하고, 해당 자료 모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
 -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,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하며,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취소 처리할 수 있음. 채용 취소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 채용 여부와 무관함.
 - 근무개시일은 채용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함.
- 청년 근무조건
-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(근무시간) 1일 8시간(주 5일 근무, 주 40시간 범위 내 적용)
 - ▶ 토·일요일,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
 -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 근거 4대 보험 의무 가입
 - (근무장소)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
 - ▶ 본사, 지사,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·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 제한할 수 있음.
 - (근태관리) 지문, 카드 인식시스템,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

※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.

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,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,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